(별지1)

□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 평가 등급 및 점수현황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가등급 (점수)	마 (73.16)	라 (72.26)	라 (73.34)	다 (77.73)	라 (77.86)	미발표

○ 인구 50만 이상시의 공단 경영평가 현황

연도 / 평가등급	2002	2003	2004
가	서울	부산	서울, 부산
나	부산, 대구, 인천	서울, 대구, 울산	대구, 수원, 성남
다	**부천**, 용인 성남, 울산	인천, 수원, 성남, 창원	용인, 안양, 울산, 인천, 창원
라	안양, 장원, 수원	**부천**, 안양	**부천**, 고양, 청주
마	청주	용인, 청주	

□ 임 원 문 책 양 정 기 준(임원인사규정 별표)

비위도 및 과실 / 비위의 유 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 질서문란 나. 기 타	해 임 해 임	해임-경고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2.복종의무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3.직장이탈금지 위 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4.친절공정의무 위 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5.비밀엄수의무 위 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6.청렴의무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7.품위유지의무 위 반	해 임	경 고	주 의	주 의
8.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 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9.집단행위금지 위 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주 의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공단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8)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책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황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황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비 고 :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